〈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70205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70207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1203

홉슈크림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홉슈크림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홉슈크릮코리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8 지1층 B102호

[가맹본부의 전화 및 팩스번호] TEL : 02-469-2378 FAX : 02-468-237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가맹사업부 TEL: 010-8871-3740/02-469-2378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자료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홉슈크	.림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지1층B102호						
(주)홉슈크림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 등록 일	대표자	대.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코리아	2015.6.5.		2015.5.28.	기정민	02	-469-2378	02-468-2378		
	법인등록번호	11011	1-5744176	사업자등록변	호	682-8	31-0011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성동	등구 성수이로 24길	지1층B102호		
대표이사	기정민	홉슈크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기정민	02-469-2378	02-468-237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최재인	홉슈크림	서울시 성동	등구 성수이로 24길	지1층B102호		
· '	, _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사	이사 성래현	홉슈크림	기정민	02-469-2378	02-468-2378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 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홉슈크림	먹다가 망한다는 도시 오사카, 그 중에서도 먹거리와 디저트 천국인 난바와 신사이바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사카 대표 디저트 브랜드
상 호	홉슈크림점	
상표(서비스표)	HOP CHOU CREAM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는 2015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최근 3년간의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663,950	701,296	-37,346	588,200	-252,349	-212,974
2022년	709,085	252,034	457,051	399,888	-185,966	-105,603
2023년	819,038	150,516	668,521	580,365	210,709	211,470

2) 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위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171611	ol =	÷1 7101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1=11 - 1 - 1	기정민	대표이사	2015.5. ~ 현재	대표이사	경영 및 관리			
가맹사업 관련 임원	최재인	이사	2015.5. ~ 현재	이사	경영 및 관리			
22 02	성래현	이사	2022.10.~현재	이사	경영 및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검 	상근	비상근	격천구(경)
2023년 12월 31일	2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홉슈크림 (상표권)	가맹점 운영	2015.9.23. 출원 2016.6.14. 등록	출원 제41-2015-00455 92호 등록 제41-0362489호	㈜홉슈크림 코리아	2026.6.1
HOP CHOU CREAM (상표권)	가맹점 운영	2015.9.23. 출원 2016.7.13. 등록	출원 제41-2015-00455 95호 등록 제41-0362490호	㈜홉슈크림 코리아	2026.7.1
홉슈크림 (상표권)	가맹점 운영	2015.9.23. 출원 2016.6.14. 등록	출원 제41-2015-00456 75 등록 제41-0362491호	㈜홉슈크림 코리아	2026.6.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흡슈크림 가맹사업 현황

1. **홉슈크림을 시작한 날: 2015년 12월 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5년 12월 4일)

2. 홉슈크림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홉슈크림	ㅎ ᄉ 그리	기정민	2015.12.4. ~ 현재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코리아	홉슈크림	기정민 	2013.12.4. ~ 언제	지1층 B102호

3. 홉슈크림 업종

영업표지	업종				
호 ᄉ 그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u>홉</u> 슈크림	제과제빵	슈크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 Cd		2021.12.3	1		2022.12.3	1		2023.12.3	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	6	3	6	2	2	3	1	2
서울	3	1	2	4	2	2	2	1	1
부산	1	1	0	-	_	_	-	_	-
대구	-	-	-	-	_	-	-	-	-
인천	-	_	-	-	_	_	1	_	_
광주	_	_	-	-	_	-	-	_	-
대전	ı	_	_	ı	_	_	ı	_	_
울산	_	_	_	-	_	_	_	_	_
세종	-	_	-	_	_	_	-	_	-
경기	3	2	1	2	_	2	1	_	1
강원	_	-	-	_	-	-	-	-	-
충북	-	_	-	-	_	-	-	_	-
충남	-	_	-	-	_	_	-	_	-
전북	-	-	_	_	-	-	-	-	-
전남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경남	2	2	0	_	_	_	_	_	_
제주	-	_	_	-	-	_	_	_	-

5. 바로 전 3년간 흡슈크림 가맹점 수

당 가맹본부는 2017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1개입니다.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①	계약 해지 ^②	명의 변경 ^③	연말
2021	6	1	1	0	0	6
2022	1	1	0	0	0	2
2023	1	0	0	1	0	1

6. 홉슈크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 매출액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7] Cd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포 매출액(연간 편 매출액(비고					
지역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	116,141	16,562					5개수 미만					
서울	1	116,141	16,562					5개수 미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	3년 1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홉슈크림과 관련된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예치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가맹금 예치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계좌번호	가입자명	비고
기업은행	062-097274-04-012	㈜홉슈크림코리아	

귀하는 가맹금 등을 국민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방식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부가서비스-가맹점예치제 서비스" 클릭 후 회원정보(인출계좌 등)를 입력합니다. 회원정보입력이 완료되며 가맹사업본부 중 "홉슈크림코리아"를 선택하고 금액(가맹금) 입력 후 완료를 선택하시면 지정하신 인출계좌에서 국민은행 예치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 오프라인 방식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 창구에서 홉슈크림코리아를 가맹점사업본부로 지정하셔서 입금 요청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 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홉슈크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광고비용, 외부 공사, 소방방염시설공사, 전기증설공사, 철거공사, 화장실공사(필요시), 의탁자, 냉난방기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7 13	⊐.oïi	지급 기한	비고		
	구분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2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40%	체결 후 다음날까지			
	가입비	(5,280)	점포개설 이전까지 계약해지시 반환합니다.			
	Know-		체결 후 다음날까지			
가 맹	how 제공 대가	30% (3,960)	점포의 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합니다.		
비비	개업		체결 후 다음날까지			
	지원 및 각종 자료 제공	30% (3,960)	점포의 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체결 후 다음날까지	게이그 이이 기자니머		
	교육비 (5,500)		개업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시 반환합니다.	개업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계약이행 보증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 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이행 보증금	5,000	체결후 다음날 <i>까</i> 지	교육비, 경영지도비, 광고 . 판촉비 등 모 든 금전적 채무액 발 생 및 손해배상액의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 액을 공제 후 상호, 서비 스표 등 甲과 관련된 영 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1,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계탁이영 모증급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물품 구입 및 임차><표5-1 물품 LIS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05,000(20평7帝	5,300			
주방설비/집기	협력업체	45,000	2,250	계약 체결시 개별 계약	설치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있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55,000	2,750	계약 체결시 개별 계약	공사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있음
최초 상품 비용	가맹본부	5,000		점포개설 전 3일	상품 미공급시	
감리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자체시공시 : 3.3㎡ 당 [550,000]원 부담		점포개설 전 3일	공사 전 계약취소	

- ※ 상기의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외부(간판)공사, 소방방염시설공사, 전기증설 공사, 철거공사, 화장실공사, 의탁자, 냉난방기기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비용 이 부담됩니다.
- * 지정업체의 정보는 정보공개서의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표 4-1 지정업체 LIS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는 귀하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 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차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영업)이 가능한 자	가맹사업이 가능한자
종업원	휴게음식점 근무가 가능한 자	1. 홉슈크림 직영점 및 홉슈크림의 타 가맹점 직원을 자신의 점포에 근무하도록 유도할 수 없음. 단,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가능함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3. 간겅진단결과서 (보건증) 취득 가능한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0. 광고 및 판촉활동> <표 5-4 광고분담내역 LIST>」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2%	익월 10일	소멸	계약이행시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전국광고)	가맹본부	가맹본부(50%)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丑 5-4
광고 분담금 (지역광고)	가맹본부	가맹본부(50%) 지역 가맹점사업자 (50%)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광고분담내역 참고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사전 통지	교육 실시 3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30 = 0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상호협의	간판 변경 3일 이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 용	가맹본부	상호협의	교체.보수 3일 이전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개선 3일 이전			₩.가맹본부의 경영및영업활동

		제외한 나머지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상호협의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quot;로열티"는 후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에 사전통지를 하고 분담금이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갱신 가맹비	3,300	계약연장(갱신) 3일전까지	계약연장(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시	부가세별도 실평수기준
점포 이전비	해당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 37 조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 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 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 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 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 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 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잔여계약기간으로 체결시 영업양수인은 당사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잔여계약기간으로 계약시

잔여계약기간으로 체결시 영업양수인은 당사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5,500	부가세포함	
교육비	5,5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나. 신규계약으로 계약시

신규계약으로 체결시에는 영업양수인은 당사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 과정의 부담은 신규계약시의 부담 금액과 동일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11,000	부가세포함
교육비	5,5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8. 가맹 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표 5-3 영업양도절차 LIST>」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제 7 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홉슈크림』시스템 및 메뉴, 조리법, 운영방법, Know-how 등 『홉슈크림』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등 『홉슈크림』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乙의 비용으로 7일이내에 乙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철거 및 원상복구 및 철거의 비용은 본 계약이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甲이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乙이 부담한다.
- ③ Z이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 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500원씩[매장면적(㎡)X지체일수X1,5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乙은 『홉슈크림』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甲이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甲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홉슈크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항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의 리스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표 5-1 판매상품 LIST> 참조	아래와 같음	1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2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이상위반 : 계약해지절차	

취급상품 제한내용 및 조건

취급상품 제한

<가맹계약서 제 21 조 [경영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 ① Z은 식품의 제조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등에 대하여 『홉슈크림』의 이미지 및 맛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甲의 지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乙은 甲의 사전승인 없이, 『홉슈크림』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상품이나 메뉴 이외의 상품이나 메뉴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乙이 甲이 정한 상품의 메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甲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이나 소비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표 5-2	<가맹계약서 제 20 조 [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 > ④ 乙은 甲의 동의 없이 甲으로 부터 공급받은 상품 . 자재를 다 른 가맹점이나 소비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 다.	1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2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이상위반 : 계약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 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2 판매상품 LIST> (2023년 12월 기준)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오리지널커스터드슈	2,500	
쇼콜라슈	2,800	
그린티슈	2,800	
크림치즈슈	2,800	
마론슈(Seasonal)	2,800	
고구마슈(Seasonal)	2,800	
망고슈(Seasonal)	2,800	홈페이지에 공지
아쯔아쯔 오리지널(Seasonal)	3,500	또는
아쯔아쯔 초코칩(Seasonal)	3,800	서면통지 또는
아쯔아쯔 카라멜(Seasonal)	3,800	POS공지
오리지널밀크파르페 (Seasonal)	4,000	
초코바나나파르페(Seasonal)	4,500	
인절미파르페(Seasonal)	4,500	
카라멜크런치파르페 (Seasonal)	4,500	
믹스드베리파르페(Seasonal)	4,500	
망고파르페(Seasonal)	4,500	

^{*} Seasonal 제품은 상권 및 시즌 별로 당사의 메뉴 변경안에 따라 변동됩니다.

권장가격은 상권 및 당사의 메뉴 변경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격통보방법 및 제한]

가격 제한

<가맹계약서 제 21 조 [경영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 ③ 乙은 甲이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의 소비자 가격에 관하
- 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甲이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상품별 또는 용역별 소비자 권장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제시하는 소비자 권장가격이 물가 변동 또는 甲 또는 乙의 영업 정책 등으로 인하여 변동할 경우, 甲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하고 시행 2주전에 이를 乙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Z이 지정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2주전에 이를 서면에 의하여 변경 의사를 甲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없습니다.

트이랑 어젯 베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슈크림과 음료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u>홉</u> 슈크림	해당없음	

[※] 당사는 계열사가 없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u>500m</u> 이내 단,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오피스빌딩,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반경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기재하십시오.
- ② 예시: 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으로 표시, 행정구역별로 표시 등
- ③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으로 영업지역은 변경가능하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할 경우는 가능
- ④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준수-변경사유

<가맹계약서 제 4 조 [영업지역]>

- ② 甲은 乙의 영업지역을 존중하며, 乙의 동의없이 甲의 『홉슈크림』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거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乙의 영업지역 내에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 정에서 가맹점이나 직영점 개설에 대해 乙과 합의를 거쳐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브랜드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 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자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31.2%	68.8%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홉슈크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하며,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 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사유

<가맹계약서 제 5 조 [계약기간]>

- ② 甲은 乙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甲은 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 1. 乙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Z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甲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Z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 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Z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甲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乙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甲이 乙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계약서 제 6 조 [계약의 해지]>

- ① 甲 또는 乙은 다음 각 호의 위반한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乙이 제8조[가맹금 및 로열티]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Z이 제10조[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乙이 제12조[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 . 시정요구권] 각 항에 의거한 甲의 시 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 4. Z이 제17조[Z의 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5. 乙이 제20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6. 乙이 제21조[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7. 즈에게 제23조[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8. Z이 제28조[Z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9.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 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10.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6조 [계약의 해지]>

- ②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3 영업양도절차 LIST>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담당팀
행심 운영 기준을 준수일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 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매부터

- ①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비용으로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IV. 가맹점사업자의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 잔여계약기간으로 계약시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다만, 당사와 영업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나. 신규계약으로 계약시 부담비용)으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계약 상속 사유 발생 → 당사 통지 → 당사 검토 → 상속인에게 서면 통지 → 완료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없습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한기간	경업금지 되는 업종	제한지역
계약기간 중	슈크림 등 당사 메뉴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매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문의: 02-468-237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7일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점주부재시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VII O IN □	에 3 W -	가맹본부로 연락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4 광고분담내역 LIST>

구분	과고서건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ਦ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결시	-177	
	브랜드광고	50%	50%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상품광고	3070	(전체가맹점)	통하여 제시	전국광고	
전국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없음	(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하여 제시	5세 교산시 중)	
지역광고	가맹점 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하여 제시	지역단위광고	
개별광고	가맹점 매출증진	어음	100%	해당없음	단독광고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표준지침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 광고/판촉활동

<가맹계약서 제 16 조 [광고 및 판매촉진 등]>

- ⑥ 甲은 乙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판촉 활동"을 지시 할 수 있으며, 비용은 乙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甲이 지원할 수 있다.
- ① 乙은 판매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할 경우, 그 형식이나 소재,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甲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甲이 제시한 요건 및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비용은 乙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甲이 지원할수 있다.
- ⑧ Z은 전항의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 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甲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표준지침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 광고/판촉활동

<가맹계약서 제 16 조 [광고 및 판매촉진 등]>

- ⑥ 甲은 乙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판촉 활동"을 지시 할 수 있으며, 비용은 乙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甲이 지원할 수 있다.
- ① 乙은 판매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할 경우, 그 형식이나 소재,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甲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甲이 제시한 요건 및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비용은 乙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甲이 지원할수 있다.
- ⑧ 乙은 전항의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甲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 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 9 조의 2 [손해배상액의 예정]>

- ①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경우 또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甲 또는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乙이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점포개설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액을 3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 乙의 직전 3개월간 甲으로부터 매입한 월평균 매입액 X 5% X 잔여기간(월)
- ② 전항의 위약금은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

⑧ 乙이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甲 또는 甲이 공식지정 한 업체가 공급하거나 승인하는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위약금으로 **일금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28 조 [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 ④ 乙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을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중 제3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乙은 甲에게 위약금으로 건당 일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기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6 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1일이상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일이상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1일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40 67	- 계약서 제공	계약서 체결일 14일 이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제공 후 14일 또는 7일	7-1 1)~4)를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1일이상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이상		
실내외 공사착수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영업설비/집기 입고			
교육 실시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초도물품 입고	- 원/부재료 등 필요물품 입고	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14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

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 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www.kofair.or.kr) 다른 법 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		rl 그 저 əl	비용부담
'삼포완'경' N인 스튜	비용항목	비용비율	시급결시	제외사유
점포환경 1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경우		ㅇ점포의 확장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제외사유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
차>
ㅇ 가 맹 점 사 업 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
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자 계획중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지원제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 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상품, 설비(집기),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가맹본부	판매촉진, 고객관리,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가맹본부	문의 :
요청 시	위생관리, 교육훈련,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부담	가맹본부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건박에 베를 거어지도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상품, 설비(집기),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ᄀᄓᆘᆏᆟᄓᇬᆉ	판매촉진, 고객관리,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ᄀᄓᆘᅐᅥ	□ ol ·
가맹점사업자	위생관리, 교육훈련,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가맹점	문의 :
요청 시	회계 등 가맹점 운영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개점전)	매장관리 교육 / 메뉴 교육 / 고객서비스 교육 / 상품관리 교육 등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현장/실습 교육 이론교육 (당사가 지정한 장소)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이전	필수 교육
재교육	메뉴 제조방법 등	현장/실습 교육 이론교육 (당사가 지정한 장소)	개점 후	필수 교육 (2번 누적 경고를 받은 매장에 한함)
신메뉴 교육	매장관리교육 / 메뉴교육 / 고객서비스교육 / 상품관리교육 등	현장/실습 교육 이론교육	개점 후	필수 교육 (신메뉴 출시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개업 교육	3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재교육	사전통지	2명 기준 1,100	
신메뉴 교육	사전통지	실비	

[※] 개업교육시 인원은 2명으로 한정합니다. 교육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본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가맹계약서 제 10 조 [교육 및 훈련]>

- ⑥ Z이 제1항과 제2항의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甲은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할 수 있다.
- ⑦ 甲은 乙과 乙이 고용한 직원이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적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甲은 乙의 책임으로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역	명칭	소재지(주소)				
서울	롯데 영등포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경기	하나로마트 동 탄점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603-1 농협하나로동탄유통센터 2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2023년	직영점 평균 운영기간
	3년 7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천원

2023년 직영점 연 평균 매출액	비고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128,264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참자료 ㈜홉슈크림코리아 재무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기 6급 케이션 6의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급		원 정)
신	청인의 계좌						
가믹	생본부의 계좌						
	사업거래의 공정 ^호 '에 따라 위와 같 [©]						행령 제5조의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 <i>켜</i>	치기관의 장 귀	ōŀ					
	지점장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가맹희망자분이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비밀유지확약

상기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 20 년 월 일

가맹 본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 령 자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 령 지 :

가맹거래사 확인 및 자문: (인)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 우에는 당사(02-469-237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